

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

선정사업 안내서

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활기찬 일터를 찾습니다.



고용노동부

노사발전재단



I.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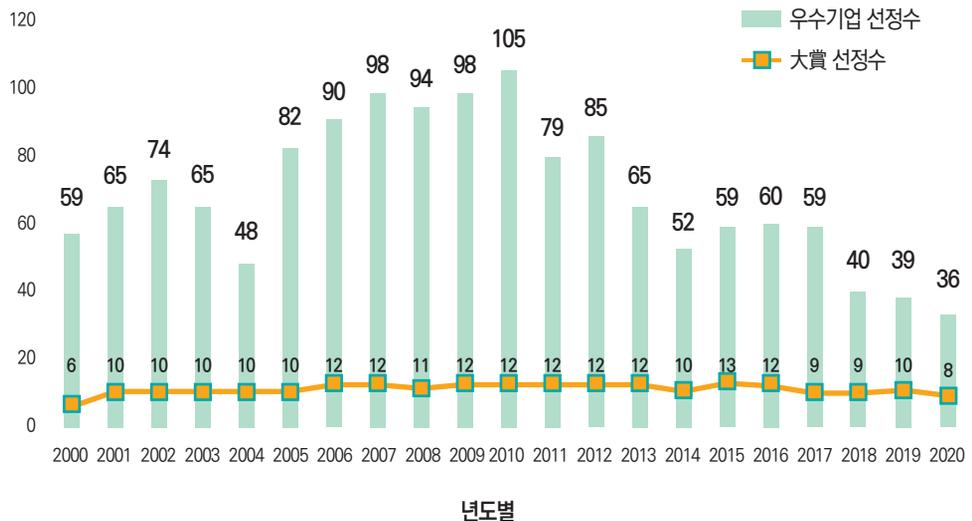


-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**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**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·포상
 - 상생·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

Ⅱ. 사업경과

- '96년부터 「노사협력 우량기업」을 선정, 「노사협력 우량기업」중 탁월한 기업에게 「노사화합대상」시상
- '00년, 「신노사문화우수기업」 및 「신노사문화대상」으로 명칭 변경
- '05년, 「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」으로 변경
- '08년부터 「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」 선정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·수행

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현황



※ '00년~'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1,452개사, 노사문화大賞 총 222개사 선정·시상

Ⅲ.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

기본 방향

- ▶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·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공개경쟁으로 선정·포상

1. 신청자격 및 방법

1 신청자격

- (우수기업)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공고일 기준)
 -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
- (大賞) '19~'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
결격사유
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
-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명단 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-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
- 국세기본법, 관세법,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

2 신청 및 접수

● 신청기간

- 우수기업: 2021. 3. 2.(화) ~ 4. 2.(금)
- 大 賞: 2021. 7. 12.(월) ~ 8. 13.(금)

● 신청방법

-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nosa.or.kr>)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



- 반드시 **노·사 대표자 공동명의로** 신청

* 복수노조 사업장은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

- 중소기업·대기업·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

·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(제12조 제1항 관련)

- ▶ 제조업: 500명 이하
- ▶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및 통신업 등: 300명 이하
- ▶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: 200명 이하
- ▶ 그 밖의 업종: 100명 이하

* 사업장(공장 등)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

·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

■ 신청서류

번호	구비서류	서류양식	비고
1	신청서	붙임 1	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
2	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	붙임 2	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(A4 100페이지 이내)
3	추진실적 증빙자료	-	PDF 파일로 제출
4	납세증명서	-	국세청 발급 후, 스캔본 제출

* <붙임1> 신청서 및 <붙임2>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양식 참조

2. 심사 및 선정

1 심사위원회 구성

-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大賞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
 - 노사관계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
 - *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
- 심사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〈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위원회〉

- 당연직 위원(2인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 및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- 지명직 위원(5인 이내): 지방고용노동청장(대표지청장)이 추천하는 전문가

〈노사문화大賞 심사위원회〉

- 당연직 위원(2인): 노사협력정책관, 노사발전재단 책임자
- 지명직 위원(5인 이내):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

2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·선정

〈1〉 사전검증 실시

- 노사 상호간 대립·갈등적 요소 해당여부,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시 노동자 대표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
 - ▶ 최근 2년 이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인용재결(구제명령) 여부
 - ▶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의견 송치 여부
 - ▶ 노조대표(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)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에 동의하는지 여부(복수노조 사업장은 전체 노조를 대상으로 확인)
-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
 - * 신청 관련 결격사유 및 감점기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

감점기준

- ▶ 최근 2년 이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(1건당 10점)
- ▶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(1건당 10점)
- ▶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(1건당 5점)

〈2〉 1차 심사(서면심사)

-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서면심사를 실시
 - 취득점수를 평균하여 만점(1,000점)의 85%(850점) 이상 획득한 기업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 (1,000점±가·감점)
노사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■ 노사관행 개선실적 ■ (감점) 노동관계법 위반 	100점 (감점 최대 50점)
노사문화 실천요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■ 인적자원 개발·활용 ■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해소 노력 ■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■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■ (가점) 일터혁신 인증 기업(10점) 	5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■ 노사의 사회적 의무 ■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 ■ (가점)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강화(건당 10점) 	400점 (가점 최대 50점)

* <붙임 3> 1차 서면심사 기준 참조

〈3〉 2차 심사(사례발표심사)

- 1차 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심사
 - 사례발표는 8개 지역별 「경진대회」 형식으로 개최
 - 필요 시, 현지 실사 실시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(700점)
노사관계일반	■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및 극복 사례,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100점
열린 경영 및 노동자 참여	■ 경영 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,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	100점
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	■ 프로그램 내용, 교육훈련의 만족도 및 효과성, 공정한 인사관리, 배치 전환 등 고용유지 노력	100점
임금 적정성 및 격차해소 노력	■ 산업 평균 대비 임금수준, 급여증가율, 임금 격차 해소 노력	50점
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	■ 근로복지시설 운영·개선, 작업환경 개선,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의 노력 및 효과성, 일·생활 균형 실현	100점
노사의 사회적 책임	■ 기업 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, 원·하청 간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,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, 기업의 노동정책 이행 정도	200점
발표태도 및 기법	■ 발표태도 및 노사 대표자 참여도 등	50점

* <붙임 4> 2차 사례발표심사 기준 참조

〈4〉 선정

- 2차 심사에서 만점(700점)의 85%(595점)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 - 선정된 기업은 본부의 검증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
 - * 대표(지)청은 선정 즉시 본부 보고 → 본부는 각 실·국에 조회 등 검증 실시 및 필요시 지역별로 중복 사업장 조정의견 통보 → 대표(지)청 최종 확정

3 노사문화大賞 심사·선정

〈1〉 大賞 규모(안)

- 大賞 규모는 대통령상 2점, 국무총리상 3점, 장관상 5점
 - 최종 시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

〈'21년도 大賞 규모(안)〉

(단위 : 점)

구 분	계	대통령상	국무총리상	장관상
'21년도	10	2	3	5
'20년도	8	2	3	3

〈2〉 1차 심사(서면심사)

- 노사문화大賞 신청기업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'21년도 시상규모의 1.3배수 (13개)를 2차 사례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

〈3〉 2차 심사(사례발표심사)

- 1차 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「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(사례발표 및 질의응답)」를 개최하여 2차 심사 취득점수에 따라 노사문화大賞 선정(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)
 - * 1·2차 심사기준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 적용

4 선정기업 지원

- (유효기간) 우수기업 및 大賞 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
- (지원내용)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상 또는 금융상 우대

* <붙임 5>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참조

3. 선정취소

1 요건 및 효력

- (선정취소)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선정되기 이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「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」 선정을 취소
- (우대조치 철회)
 - ① 선정된 이후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 - ② 인증 유효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 -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의해 체불사업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 - ④ 불법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래 우대조치 철회 가능
- 선정이 취소된 경우,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신청자격 박탈
 - * 소속 사업장이 선정 취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소속 사업장 모두 5년간 신청자격 박탈

2 시기

- 유효기간(3년) 동안 사유발생시 수시로 판단, 결정

3 절차

- 사유 발생 → 해당 기업 조사(지방관서) →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정(관할 지방 대표(지)청) → 취소 또는 철회

4. 시상 및 홍보

1 선정 공고

- 전국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

2 시상식 및 인증서·인증패 전수

-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·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- 노사문화大賞 시상식: 12월중 개최

3 홍보

- 노사문화大賞 공고, 사례집 발간,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상생·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
- 언론사를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기사 게재
-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수상기업의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환과 수상기업의 모범사례 전파

5. 추진일정

구분	추진일정	비고
■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	3.2.~4.2.	■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활용 (www.nosa.or.kr)
■ 서류검토 및 사전검증	4.5.~4.7.	■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감독관)
■ 심사준비	4.8.~4.16.	■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, 노사발전재단 ■ 감점기준 및 결격사유 등 조회
■ 지역 1차 심사(서면심사)	4.19.~5.7.	■ 8개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별로 심사
■ 현지 실사(필요시)	5.10.~5.21.	■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
■ 지역 2차 심사(사례발표심사)	5.24.~6.4.	■ '경진대회' 형식으로 개최
■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공고	6.23.(예정)	■ 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 ■ 보도자료 배포
■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	7월 중	■ 권역별 계획 수립
■ 노사문화大賞 신청접수	7.12.~8.13.	■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활용 ■ '19년~'21년 우수기업
■ 심사준비 및 사전검증	8.16.~8.25.	■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감독관), 노사발전재단
■ 大賞 1차 심사(서면심사)	8.26.~9.3.	■ 13개 기업을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
■ 현지 실사	9.6.~9.17.	■ 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■ 大賞 2차 심사(사례발표심사)	10월 초	■ 大賞 선정 및 훈격 결정
■ 노사문화大賞 선정 공고	10.20.(예정)	■ 공고(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) ■ 보도자료 배포
■ 우수사례 벤치마킹	11월 중	■ 노사문화大賞 수상기업 벤치마킹
■ 사례집 제작·배포	11~12월 중	■ 사례집 제작·배포
■ 시상식 개최	12월 중	■ 시상 및 합동시상식 병행 ■ 보도자료 배포

※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

신청서 작성요령

1.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가. 신청서와 부속서류인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

* 허위서류 작성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정지

나. 심사항목별 내용 설명서는 소정양식에 따라 실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조·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계량단위로 표시되는 실적은 계량화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요약 설명

2.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

① 신청구분: 신청 단위가 기업 단위(기업 전체)인지 사업장 단위(공장, 지사)인지 표시

② 기업구분
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**중소기업**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-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함

③ 사업체명: 기업 단위는 본사, **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 명칭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)**을 정확하게 기입

③-1, ③-2: 기업 단위는 본사,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주의 성명과 직책(직위)를 기입

④ 업 종: 신청기업의 사업종류를 기입(예, 화학제품제조)

⑤ 소재지: 기업 단위는 본사,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주소를 기입

⑥ 노동조합: 노동조합 유무, 복수노조 유무, 상급단체 기입, 노동조합명(노사협의회명) 기입

⑥-1, ⑥-2: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

⑦ 노동자수: 신청일 기준 노동자수 합계(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수)를 기입하고 노조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장 조합원 수를 괄호 안에 기입

- ⑧ 자본금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 - ⑨ 연매출액: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
 - ⑩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: 기업 단위는 본사,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입
 - ⑩-1 산재보험관리번호:
 - * 사업장 단위 신청시 ⑩-1에 해당 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 - * 기업 단위 신청시 ⑩-1에 본사의 산재보험관리번호를 기재하고 '⑬사업장현황'에서는 소속된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 - ⑩-2 고용보험관리번호: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재확인 위해 기재 필수
 - ⑪ 사업개시일: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재(합병에 따른 사업 승계 시는 그 이전 사업 개시일 기재)
 - ⑫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기: 前 우수기업 선정 시기를 명시(예: '16년)
 - ⑬ 사업장 현황: 기업 단위의 경우 여러 사업장(공장, 지사 등)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을 모두 기입
 - ⑭ 기업 단위는 사업주가 서명하고, 사업장 단위는 사업장 대표자가 서명
 - ⑮ 노조가 있는 기업(사업장)은 노조대표자,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가 서명
- ※ 모든 업무연락은 e-mail을 이용하므로 정확하게 기재

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1. 사업장 일반현황

□ 노사개요

사업체	노동조합(노사협의회)
• 명 칭:	• 명 칭:
• 소재지:	• 상급단체:
• 대표자:	• 대표자:
• 노동자수:	• 조합원수:
• 업종 및 주요생산품:	• 설립일:
• 설립일:	• 임(단)협만료일:
• 연락처:	• 연락처:
• 연혁:	• 연혁:

□ 노사관계 변천사

※ 당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천 과정을 약술

□ 노사관계 안정요인 및 계기

※ 갈등을 겪은 후 안정되었다면 그 배경, 계기, 안정요인 등을 기술

※ 갈등 관계가 없이 계속 안정을 유지하였다면 안정요인 등을 기술

2. 노사상생협력 추진 체계도

- ※ 노사상생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 및 비전 등을 기술
- ※ 현재 운영중인 갈등관리 방식(체계) 등을 기술

3. 기업경영 현황

- ※ 단위사업장의 경우, 기업의 총액도 함께 기술

(단위: 원)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
1. 연간 매출액			
- 연간 매출액(증가율)			
2. 당기 순이익			
- 당기 순이익(증가율)			
3. 1인당 노동생산성 (매출액/전체 노동자수)			
4. 인건비 총액			
-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			
5. 임금			
- 전 직원 평균임금			
- 평균임금 중 변동급 비중			
- 신입사원(남성) 평균임금			
- 신입사원(여성) 평균임금			

4. 노동환경 현황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
1. 고용			
- 노동자 수			
-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			
- 이직률			
- 명예퇴직 실시여부			
- 비정규직 노동자 수			
- 여성 노동자 수			
- 여성 관리자 수			
- 장애인 노동자 수			
- 장년(55세 이상) 노동자 수			
2. 노동시간			
- 주당 평균 노동시간			
-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			
-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			
3. 일·생활 균형			
- 전체 육아휴직자 인원			
- 남성 육아휴직자 인원			
4. 안전보건			
- 산업재해 발생건수			
- 안전보건 노사협의기구 설치·운영 여부			
5. 상생협력			
- 사내하청 노동자 수(업체수)			
- 협력사와 동반성장 정책수립 여부			

5.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

- ※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순서대로 기술하되, 세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실적도 포함
- ※ 2019년 1월 ~ 지원 당일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

[요약자료]

대항목	세 부 항 목	추진실적(신명조 13p) (요약하여 개조식 기술)
I. 노사관계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	○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(요약)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○ 추진실적 기술(요약)
II. 노사문화 실천요소	1. 열린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○ 추진실적 기술(요약) (이하 같음)

※ 심사항목의 서면심사 기준의 항목순서에 따라 한글(신명조), A4종 형태로 5쪽 이내 작성

[심사자료]

대항목	세 부 항 목 (신명조 13p)	추진실적(신명조 13p)
I. 노사관계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(신명조 11p)	○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극복사례 기술
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○ 추진실적 기술
II. 노사문화 실천요소	1. 열린경영과 노동자 참여 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○ 추진실적 기술 (이하 같음)

※ 심사항목의 서면심사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글(신명조), A4종 형태로 95쪽 이내 작성하되,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 증명 자료는 뒷면에 붙임 순으로 첨부

1차 서면심사 기준

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총점		1000					
I. 노사 관계	1. 최근 2년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	50					
	○대립·갈등적 요소 극복 사례						
	(감점) 발생 건당 감점	-50	(최대 -50)				
	○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		()건×10점				
	○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'기소' 의견 송치 여부		()건×10점				
	○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(기소송치 제외)		()건×5점				
I. 노사 관계	2.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	50					
	○개선이유						
	○노사공동 협의 개선여부 ○개선내용 - 구체적 개선내용과 단협·취업규칙 개정 여부						
II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1.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	100					
	(1)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						
	○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(노사공동워크숍, 노사관계진단, 일터혁신 관련 교육 및 컨설팅, 설문조사, 벤치마킹 등) 실시 관련 - 프로그램 도입 이유 및 의사결정 과정 (노사공동기구 설치·운영 등) - 각종 프로그램별 실시 성과 -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등						
II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(2) 일터혁신에 노동자 참여 정도						
	○노동자나 노조 의견수렴 후 일터혁신 프로그램 도입여부 등						
	○의사결정권을 작업부서 단위로 이양한 정도, 이양된 권한의 내용·성과 등 ○현장 노동자들의 품질관리나 기계장비 보전업무 (예: My machine운동) 수행정도 등						

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Ⅱ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2. 인적자원 개발·활용	100					
	(1) 프로그램의 내용의 충실도 ○ 직종, 직급, 연령, 성별 및 내·외부, 온·오프, 신입·재직자·전직자 교육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시행여부 ○ 프로그램 운영 - 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 여부 - 노동자 및 노조 의견수렴 정도 ○ 프로그램 효과성 - 노동자 만족도, 효과성(생산성 향상 등)						
	(2) 투자규모 ○ 수혜폭: 연도별 교육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(수강노동자 / 상시노동자) ○ 훈련시간: 연간 노동자 1인당 평균 교육훈련 시간 ○ 훈련투자규모: 교육훈련비용/임금총액 ※ 재무제표상 교육훈련비용 기재						
	(3) 공정한 인사관리 ○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- 채용·배치·이동·승진·평가 등의 공정성 - 불합리한 인사관리 체계 개선 ○ 생산직/영업직 노동자의 관리직(임원) 수 ○ 여성노동자의 관리직(임원) 수						
	(4) 고용안정노력 ○ 일자리나누기,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노력,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○ 전직지원 등의 고용안정지원						
	3.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해소 노력	50					
	(1) 적정 임금수준 보장 ○ 신규입사자 임금수준(초임수준) ○ 1인당 연평균 급여 수준(산업평균 수준 여부) ○ 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가율/물가상승을 반영 정도						
	(2) 임금격차 해소 노력 ○ 최고/최저, 각 직급별 임금격차 적정성 ○ 최고/최저, 각 직급별 임금격차 해소 노력						

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Ⅱ. 노사 문화 실천 요소	4.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	150					
	(1) 근로복지 시설운영 및 개선 ○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- 휴게실, 직장 동호회 지원, 체육시설 설치, 휴양소, 직장 보육시설, 기숙사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 ○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						
	(2) 근로복지기금 및 자금 지원 ○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적 및 비율 ○ 저소득 노동자 지원, 주택자금, 학자금 지원 등 기업별 복지제도 운영실적						
	(3) 장시간 근로 개선 ○ 법정노동시간 준수 여부 ○ 노동시간 단축 및 효과성, 노사간 합의 여부 등 ○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노력 ○ 유연근무제 활용률, 연차휴가 사용률 등 장시간 근로개선 노력 정도						
	(4) 근무환경 개선 ○ 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사례, 작업환경의 인간화를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례 ○ 일·생활 균형 실현 사례 등						
	5.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	100					
	○ 선진 노사문화 실천에 따른 경영성과, 분야별 우수사례 및 향후 계획 등(지난 2년간 변화된 상황 중심) ○ 전반적인 우수성 및 독창성 ○ 정착노력, 개선실적 및 성과 ○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가능성						
(가점) 일터혁신 인증 기업 가점	+10						

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Ⅲ. 노사의 사회적 책임	1.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	250					
	(1) 기업내 상생협력						
	○ 비정규직, 외국인노동자, 장애인,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의 양보·배려						
	○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						
	○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						
	(2) 원·하청간 상생협력						
	○ 원·하청 노사간 공동워크숍, 상생협력관계 진단, 상생협력 교육 및 컨설팅, 공동훈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						
	○ 원·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천협약,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, 공유가치 창출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실적						
	○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						
	○ 원·하청간 공동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						
	(3) 원·하청간 공정거래						
○ 협력사와 동반성장정책 수립							
○ 협력사와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							
○ 공정한 구매/조달시스템 운영, 적정 납품가 보장							
○ 상생결재시스템 이용							
2. 노사의 사회적 의무	100						
(1) 지역사회 참여							
○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정책 수립							
○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노사의 사회봉사활동							
○ 지역주민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반영							
○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유무(대기업)							
(2) 지역사회 투자 및 기여도							
○ 공급업체 선정시 지역공급자 배려 정책							
○ 노동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							
○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							
○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-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							
3.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	50						
○ 장애인 의무고용,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수 정도							
○ 퇴직연금 가입여부							
○ 고용창출 실적 노력							
(가점) 인정건당 가점	+50	(최대 +50)					
○ 기업간 상생협력 실적	위원회 인정 실적 ()건×10점						

2차 사례발표 심사 기준

평가 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	평 점				
			A 100%	B 90%	C 80%	D 70%	E 60%
총점		700					
① 노사관계 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사간 대립·갈등적 노사관계 요소와 극복 사례(최근 2년) ○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 여부 및 구체적 개선사항 	100					
② 열린경영 및 노동자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 ○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 ○ 선진 노사문화 실천사례 및 향후 계획 	100					
③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례 ○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 만족도, 효과성 등 ○ 일자리나누기, 배치전환, 전직지원 등 고용유지노력을 통한 고용안정 실천사례 ○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	100					
④ 임금 적정성과 격차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가반영 임금인상 등 적정 임금수준 보장 ○ 임금격차 적정성과 격차해소 노력 	50					
⑤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휴게실·동호회지원·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주요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 ○ 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등 작업환경 개선 사례 ○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 노력 및 노동시간 단축 효과성 ○ 일·생활 균형 실현 사례 	100					
⑥ 노사의 사회적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정규직,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과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노력 -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개선 ○ 원·하청간 공동훈련, 동반성장 협약 체결,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○ 원·하청간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, 공정한 구매조달 시스템 운영, 상생결재시스템 운영 등 ○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및 정책 수립 ○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,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기업의 사회적 투자와 기여 ○ 장애인의무고용률 및 고령자기준고용률 준수, 퇴직연금가입 등 노동정책 이행수준 	200					
⑦ 발표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표태도 및 기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사 대표자 참여정도 감안 등 	50					

※ 사례발표심사 자료는 파워포인트(30매 이내)로 작성하여 별도 요청일까지 제출

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지 원 내 용	노사문화 大 賞	노사문화 우수기업	담당기관
< 행정상 우대 >			
● 정부포상	대통령·국무총리상, 고용노동부장관상	인증서·인증패	고용노동부
● 정기근로감독	면 제	면 제	
●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	2.5점 가점	2.5점 가점	
●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우수기업 표식	
●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	제작·송부	제작·송부	
●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	0.1점 가점	0.1점 가점	조 달 청 (국방물품혁신과)
●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	0.5점 가점	0.5점 가점	국 방 부 (재정회계담당관)
●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	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	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	국 세 청 (납세자보호담당관)
●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중소기업벤처부 (인력육성과)
● 현역인원배정시 우대	2점 가점	2점 가점	
● 크린사업 인증시 우대	최우선 선정	10점 가점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(재정사업부)
< 금융상 우대 >			
● 대출금리	0.1%p 우대	0.1%p 우대	농협
●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	우 대	우 대	신한, KEB하나 SC제일, 국민
● 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 대	우 대	신용보증기금

※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